

의안번호	2200115
의 퇴 인	모경종의원
회 답 일	2024.06.27.
추 계 번호	24D0417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3 신설(민방위사태 피해의 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시 적의 침투·도발로 생명,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·도발의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의3 신설(민방위사태 피해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민방위사태 피해의 지원(안 제32조의3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제2조제1호나목¹⁾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 시 적의 침투·도발 등으로 생명, 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생명, 신체 또는 재산피해의 지원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향후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민방위사태 선포 건수, 피해 종류별 건수 및 평균 피해액, 지원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민방위사태 선포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이었고 당시 인천광역시가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으로 인정받아 주택피해 복구, 치료비,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였음
 - 다만, 개정안의 취지는 2024년 5월28일부터 6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그에 따른 건물, 차량 등의 파손과 같은 재산상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임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향후 적의 침투·도발의 범위가 현행법보다 확대될 수 있고 피해액 지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
1)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민방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(이하 "민방위사태"라 한다)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(防空), 응급적인 방재(防災)·구조·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.

가.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

나.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

이하 생략

「통합방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~2. 생략

3. "통합방위사태"란 적의 침투·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.

4~5. 생략

6. "갑중사태"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(大量殺傷武器)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·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.

7. "을중사태"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·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·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.

8. "병중사태"란 적의 침투·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·도경찰청장,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·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.

- 다만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민방위 사태 선포 건수, 생명·신체·재산피해 종류별 건수와 평균 피해액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,630여개가 확인되었고 6월 18일 기준 12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는 검토 중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